

부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39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20. 4. 8.

판결 선고 2020. 4. 29.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5988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6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0. 4.29.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3,85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6.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F조합(이하 'F'이라 한다) 부산진지점 사무실에서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F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물품 공동 구매 출자금으로 1구좌1,100,000원을 납입하면 1일 11,700원씩 150회 지급하여 원금의 180%인 1,750,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7,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행위를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2. 23. 유죄판결(피고 B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벌금 3,4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2017고단4825호). 위 판결 중 피고 B 부분은 피고 B이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 C 부분은 피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각 확정되었다(부산지법 2018. 6. 29. 선고 2018노911 판결, 대법원 2018. 9. 4.자 2018도11490 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는 D이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F에 출자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D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기망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불법행위자이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F에 출자한바 피고들 개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출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과실상계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들은 F의 대표인 D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손해가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도 위 조합이 내세우는 사업현황이나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원고는 F의 중간관리자직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투자금은 모두 F에 지급된 것이고 그 투자금중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익상계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하나,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7,700,000원을 상당을 출자한 후, 2016. 6. 내지 7.경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88,800원, G 등에 대한 추천수당 명목으로 183,900원, 직급(팀장)수당 명목으로 30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출자금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새로운 이익에 해당하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고, 그 명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합계 582,300원(= 88,800원 + 183,900원 + 309,600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67,700원[= 3,850,000원(= 7,700,000원× 50%) - 58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민,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